

#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개정 2015.3.26.]

**제1조(설치의 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1.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수련활동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생활지도
3. 본 수련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4.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지정)**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총무 부장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자는 지도부장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로 한다.

## 제4조(카메라 설치 대수·위치 및 촬영범위)

층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1층	8대	본관·별관 승강기 입구, 동·서쪽 출입문, 로비(프런트)
2층	1대	종합강의실 입구
3층	2대	남·북쪽 복도
4층	2대	남·북쪽 복도
옥외	6대	옥외샤워장, 옥외동쪽, 중앙현관, 분리수거장, 야외무대, 주차장
합계	19대	

**제5조(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① 대전학생수련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현관>

<b>CCTV 설치 안내</b>
· 설 치 목 적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설 치 장 소 : 매일 24시간 연중
· 촬 영 범 위 : 건물 내외(현관, 복도, 승강기, 주차장 등)
· 관 리 책 임 자 : 총무부장 ☎ 041-930-8401
<b>대 전 학 생 해 양 수 련 원 장</b>

**제6조(촬영시간)**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은 연일 24시간으로 한다.

**제7조(영상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20일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8조(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①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당직실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기록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개인영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개인영상정보의 삭제는 당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제9조(개인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실제로 열람, 재생하는 장소를 당직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10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대전학생수련원장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 영상정보에 한한다.

③ 대전학생수련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전학생수련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1.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할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1조(녹화된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공·열람·정정 또는 삭제 등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안전행정부, 2011.9.)을 준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폐지로 ‘대전학생해양수련원 CCTV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5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붙임 3】

## CCTV 점검 일지

결 재	담 당	과 장	부 장

- 점검일시 :
- 설치장소 : 출입구의 벽면/천장, 건물 내·외관/각층의 천장
- 설치대수 : 카메라( 대), 영상정보 표시장치( 대), 녹화장치( 대)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불량·부적합 내역
전원부	전원공급 상태 양부		
	카메라 제어선 작동 여부		
카메라	작동 여부		
	화질 양부		
영상정보 표시장치	작동 여부		
	화질 양부		
녹화장치	작동 여부		
	화질 양부		
	영상정보 저장자료 적정 관리 여부		
접근통제	잠금장치 양부		
	로그인 암호설정 여부		
처리내용 :			

